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96. 1. 11 규칙 제 640호
개정 1996. 3. 12 규칙 제 647호
1996. 10. 29 규칙 제 670호
1998. 9. 23 규칙 제 722호(직제규칙)
2002. 2. 16 규칙 제 801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2003. 4. 11 규칙 제 817호
2003. 12. 23 규칙 제 828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2004. 6. 25 규칙 제 834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2008. 6. 16 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2009. 10. 30 규칙 제 976호
일부개정 2010. 6. 8 규칙 제 989호
일부개정 2010. 12. 15 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1. 12. 26 규칙 제1023호
일부개정 2011. 12. 26 규칙 제1024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2. 6. 1 규칙 제1038호
일부개정 2018. 7. 31 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20. 6. 19 규칙 제1233호
일부개정 2021. 12. 23 규칙 제1264호
일부개정 2023. 5. 16 규칙 제1280호
일부개정 2023. 9. 18 규칙 제1284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
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등 5개 규칙
일부개정을 위한 규칙)
일부개정 2025. 9. 12 규칙 제1327호
일부개정 2025. 12. 19 규칙 제133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19]

제2조(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) ① 광명시청(이하 “시청”이라 한다),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.
<개정 2011. 12. 26, 2020. 6. 19, 2025. 9. 12, 2025. 12. 19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.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에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정 2011. 12. 26, 2020. 6. 19, 2021. 12. 23, 2025. 9. 12〉

1. 시 소속 관용자동차
 2. 시청 소속 직원,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동차 중 각 소속 부설주차장 이용 자동차
 3. 광명시가 주최·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
 4. 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
 5. 삭제 <2025. 9. 12>
 6.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·도·시의원 자동차
 7. 삭제 <2025. 9. 12>
 8.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 표지(스티커 등)를 부착한 차량(다만,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정한다)
 9.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가지만 적용한다. 다만,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우, 제5호~제10호, 제13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. <개정 2020. 6. 19, 2023. 5. 16, 2023. 9. 18, 2025. 9. 12, 2025. 12. 19>
1. 「자동차 관리법」에 따른 경형 자동차: 50퍼센트
 2.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: 50퍼센트
 3. 「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: 50퍼센트
 4.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: 50퍼센트(다만,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한다)
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9.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(G3PLUS, 경기아이플러스카드, 주민등록표등본 등)를 제시하는 사람: 두 자녀 가정(50퍼센트), 세 자녀 이상 가정(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)
10. 전기자동차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11.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제(요일제 포함)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: 20퍼센트
12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: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
13. 업무를 위해 부서를 방문하는 자동차 : 2시간 무료

[전문개정 2011. 12. 26]

제3조(무료주차권 발부) ① 삭제 <2025. 9. 12>

② 삭제 <2025. 9. 12>

③ 삭제 <2025. 9. 12>

④ 삭제 <2025. 9. 12>

제4조(주차권의 제한)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월정기권과 시간주차권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, 월정기권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차 자동차가 많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자동차 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4. 11, 2010. 6. 8, 2011. 12. 26, 2020. 6. 19, 2025. 9. 12>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1. 삭제 <2025. 9. 12>

2. 시청 부설주차장은 시청 및 광명시민회관 내 입주한 단체 임직원, 광명시민체육관
부설주차장은 광명시민체육관 부지 내 입주한 단체 및 광명시민

[제목개정 2010. 6. 8]

제5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시청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,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.

②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한다. 다만, 각종 행사나 명절기간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개방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26, 2025. 9. 12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주차수요 · 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, 유료 운영시간은 광명동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한다. 다만,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 ·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9. 12>

[전문개정 2010. 6. 8]

제6조(주차시간 산정) ① 시간요금은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시부터,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후 1시간은 무료, 입차후 2시간 30분까지는 500원을 징수하고 그 후부터, 각각 출차시간까지를 산정한다. <개정 2003. 4. 11, 2010. 6. 8, 2011. 12. 26, 2012. 6. 1, 2025. 9. 12, 2025. 12. 19>

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, 30분 미만 시에는 30분 요금을, 30분 초과 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10. 6. 8, 2011. 12. 26>

③ 삭제 <2010. 6. 8>

④ 삭제 <2003. 4. 11>

제7조(주차요금 징수방법)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하며 시청 및 광명시민체육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시간주차와 월정기주차로 구분한다. <개정 96. 3. 12, 2002. 2. 16, 2003. 4. 11, 2010. 6. 8, 2011. 12. 26,

2020. 6. 19, 2025. 9. 12>

1. 관리인은 제2조 각 호를 확인한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 후 출차시킨다.
2.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 주차운영 웹사이트에서 2시간 주차 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.
3. 월정기권은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다.
4. 월정기권의 이용자가 주차권 이용 중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30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기간 중 자동차의 수리·검사 또는 휴가·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5. 시청의 시간요금 계산 중 운영시간 이후의 출차 자동차는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,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자동차는 오전 7시 30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하되 불법 주차자동차가 많아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6. 광명시민체육관의 월정기주차권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발행한다. 다만,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5조의 주·야간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월단위 기간동안 일정한 시간(일 15시간 이내)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간이나 야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7.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월정기권 발행은 연1회 추첨제로 할 수 있다.
8.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 징수한다.

제8조(관리인의 지정) ①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시간(광명시민체육관은 주간, 이하 같다)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2. 16>

제9조(운영시간이외의 관리) ①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자동차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② 당직자는 미출차 자동차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③ 익일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관리인은 시금고 마감 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시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업무개시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하여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)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(별지 제4호 서식)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② 자동차 소유주가 이동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,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.

[제목개정 2011. 12. 26]

제12조(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)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19]

제13조(주차장 관리) 주차장 관리인은 「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4. 11, 2008. 6. 16, 2020. 6. 19>

제14조(이용자 준수사항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, 2020. 6. 19>

1.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.
2. 주차장 이용 시 열쇠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보관한다.
3. 주차장의 만차 시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주차거부)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26, 2018. 7. 31>

1.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
2.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
4.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
5.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부칙

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10. 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2. 2. 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3. 4. 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03. 12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0. 30 규칙 제97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6. 8 규칙 제98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㉕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실·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“광명시실내체육관장”을 “광명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“광명시실내체육관장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 결재란 중 “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하단 중 “실내체육관장(인)”을 삭제한다.

㉖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12. 26 규칙 제102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11. 12. 26 규칙 제1024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각각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각각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2012. 6. 1 규칙 제103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6. 19 규칙 제123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3 규칙 제126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5. 16 규칙 제128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9. 18 규칙 제1284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25. 9. 12 규칙 제132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12. 19 규칙 제133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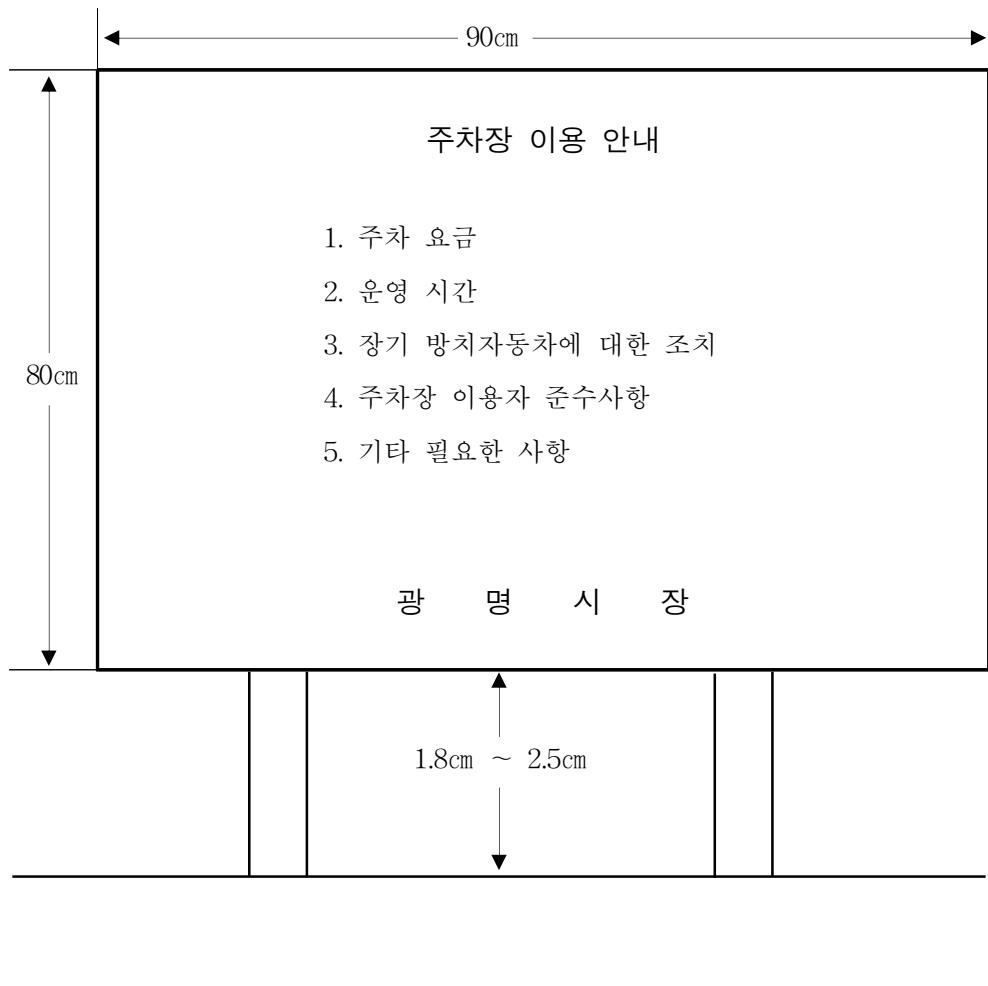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[별표 1] 삭제 <2025. 9. 12>

[별표 2] 삭제 <2025. 9. 12>

[별표 3] <개정 2011. 12. 26>

주차장 안내 표지판



○ 재료 : 알미늄판

○ 색채 :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(고딕)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호 서식] 삭제 <2025. 9. 12>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1. 12. 26>

일 일 결 산 서

- 일 자 : 년 월 일
 주차표(주차영수증) 수불 현황

결 재	○	○	○

시 간 주 차 권			정 기 권				
제작매수	사 용 분		잔 매	제작매수	사 용 분		잔 매
	금 일	누 계			금 일	누 계	

- 주차요금 수납 현황

구 분	출 입 자 동 차 총 계	면 제 자 동 차			정 수 자 동 차	
		민 원 인 (1시간 이내)	민 원 인 (1시간 초과)	타 기 관 공무원등	대 수	금 액
일 계						
누 계						

- 인계인수사항

구 分	미출차 자동차 영수증	수납된 주차요금	관 리 인	당 직 원
야 간	매 원	원	(인)	(인)
익일 오전	매 원	원	(인)	(인)

- 방치자동차 이동

자 동 차 번 호	들어온 시간	이 동 일 시	주 차 요 금	비 고

[별지 제3호 서식]

납 입 서

제 호	년도 일반회계	
(관)	(항)	
(목)		
일금 :		
기 타 잡 수 입		
[시청 주차장 운영수입]		
상기 금액을 납입함.		
년 월 일		
일 반 회 계		
수입원출납원		
직 :	성명	(인)

영수필 통지서

제 호	년도 일반회계	
(관)	(항)	
(목)		
일금 :		
기 타 잡 수 입		
[시청 주차장 운영수입]		
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.		
년 월 일		
금고(인)		
정 수 관 귀하		

영 수 증

제 호	년도 일반회계	
(관)	(항)	
(목)		
일금 :		
기 타 잡 수 입		
[시청 주차장 운영수입]		
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.		
년 월 일		
금고(인)		
수입금출납원 귀하		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11. 12. 26>

방치 자동차 조치보고

(No :)

자동차 번 호 :

들 어 온 시 간 : 년 월 일(시 분)

48시간경과시점 : 년 월 일(시 분)

위 자동차는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.

주 차 영 수 증
첨 부 란

년 월 일

결	팀 장	과 장
	재	

——— 절 ————— 취 ————— 선 —————

(No :)

이 동 의 뢐 서

아래 자동차는 광명시부설주차장 내에서 48시간 이상 무단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사 무소에 이동 · 보관을 의뢰합니다.

자동차 번 호 :

들 어 온 시 간 : 년 월 일(시 분)

이 동 의 뢐 시 간 : 년 월 일(시 분)

받아야할 주차요금 : 원

광 명 시 장 (인)